

200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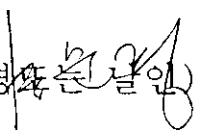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발의자 : 양순경 의원 (서명 )

외 2인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발의 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이.우경	이우경	
성명주	성명주	
김영자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4
------	------

발의연월일 : 2008. 1. .
발 의 자 : 양순경 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
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액을 제천시 재정능력과 주민의
소득수준 및 의원의 의정활동실적과 물가인상을 등을 참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월정수당 적용 기준액을 월정수당 월 2,400천원에서
월 2,150천원으로 하향조정 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을 근거로 의정
활동비의 지급기준액을 제천시 재정능력 및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과 주민의 소득수준 및 물가인상을 등을 참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형평성에 맞게 하향 조정 하고자함.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7조)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 월정수당 월 2,400천원을 월 2,150천원으로 한다.

붙임 1.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월 2,400천원” 을 “월 2,150천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u>월 2,400천원</u>으로 한다.</p> <p>②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p> <p>월 2,150천원</p> <p>② (현행과 같음)</p>